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7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24. 4. 15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	안미자 의원 외 7명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안미자 의원 외 7명
- 제안일 : 2024. 4. 2.
- 회부일 : 2024. 4. 3. (의안번호 : 24-36)

2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(국기의 계양일 등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 - 마포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“국기계양과 국기 선양”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.

○ 국기의 게양일 등(안 제4조)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국기 게양일을 규정함.

○ 국기선양사업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기선양 사업을 규정하고,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○ 가로기의 게양(안 제6조)

- 가로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(안 제7조)

-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

○ 입법예고: 2024. 3. 26. ~ 4. 2. 결과: 의견 없음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5. 검토보고

- 본 제정조례안은 안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필요한 규

정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임.

○ 제정 취지(적정성/타당성)

- 본 제정안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」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(24년 4월 기준)

- 서울특별시 및 13개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.

(‘24. 4월 기준)

연번	지역명	조례명	제정일자
1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	2016.7.14.
2	동대문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	2019.7.11.
3	강북구	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	2015.11.20.
4	양천구	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	2019.4.30.
5	강서구	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	2020.5.19.
6	구로구	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	2019.3.28.
7	영등포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	2014.2.27.
8	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	2019.1.2.
9	동작구	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	2022.12.8.
10	중랑구	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	2023.5.4.

11	금 천 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	2023.7.20.
12	관 악 구	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	2023.9.25.
13	노 원 구	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	2023.11.9.
14	성 동 구	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	2021.11.4.

○ 조항별 구성 및 내용

- 가. 안 제1조~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
- 나. 안 제4조 마포구의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
- 다. 안 제5조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, 국기보급 등 국기선양사업과 국기선양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라. 안 제6조, 제7조에는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,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국경일 등 국기게양에 대한 사항을 「대한민국국기법」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것을 동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등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기선양사업의 지원 및 가로기 게양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,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대한민국국기법」

[시행 2014. 1. 28.] [법률 제12342호, 2014. 1. 28., 일부개정]

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1. 5. 30.>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5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·24시간 게양할 수 있다.

③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.

1. 공항·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
2. 대형건물·공원·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
3.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
4.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
5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

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.

⑤국기가 심한 눈·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.

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,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별표 2] 비용추계서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
비용추계서**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: 마포구민이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태극기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
 관 련 조 문: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5조(국기선양사업)
2. 비용추계의 전제: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한 마포구민에게 가정용 태극기(5,000원) 지급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○ 태극기 구매비	7,800	7,800	7,800	7,800	7,800	39,000
	소계(b)	7,800	7,800	7,800	7,800	7,800	39,000
□ 총 비용(a-b)		-7,800	-7,800	-7,800	-7,800	-7,800	-39,000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의존 재원	소계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계	7,800	7,800	7,800	7,800	7,800	39,000
	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	7,800	7,800	7,800	7,800	7,800	39,000
지방채		-	-	-	-	-	-
민간자본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7,800	7,800	7,800	7,800	7,800	39,000

5. 덧붙이는 의견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신동빈
연 락 처	02-3153-8304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5,000원(가정용 태극기 가격) × 130건(월 평균) × 12월